

##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생후생복지위원회 내규

**제1조(명칭)**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학생후생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이 위원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의 구내후생시설(식당·매점·자동판매기·서점·사진관·이발소·인쇄실·복사실등을 말한다. 이하 “구내후생시설”이라 한다)의 운영상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

1. 구내후생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2. 구내후생시설의 경영자선정에 관한 사항
3. 학생복지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도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·학생처장·총무처장·기획조정처장으로 한다.

④ 단과대학별 위원은 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대표(2인이내)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5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 학생지원팀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

**제8조(협조요청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지시설의 위탁경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의 청취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

1.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식당운영위원회내규는 폐지한다.
2. 이 내규 시행전에 체결된 구내후생복지시설의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내규는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